



서 신 면



수신 서신면이장단

(경유)

제목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야적 및 무단방류 등 홍보 협조 요청

1. 장마·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축분뇨 야적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, 퇴·액비 유출 우려로 화성시 환경지도과에서 **2024.6.24.(월) ~ 2024.9.13.(금)까지**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, 위반 행위에 대하여 **과태료가 부과됨**을 알려드립니다.
2. 아울러,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자의 **악취 관리 의식**을 제고하고자 **"축사 악취관리 요령" 홍보물을 배부**하오니,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시행일 2024. 1. 1.)

위 반 행 위	과태료 금액 1차(만원)
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	600 이하
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	300 이하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	50 이하
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·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 -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- 악취가 나거나 쥐·모기·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- 뒤틀림 현상, 누수, 바닥의 균열 살비 가동, 방류수수질 상태 등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	50 이하
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- 퇴비·액비 검사 주기(허가: 6개월, 신고: 1년) 및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	50 이하

붙임 홍보물 1부. 끝.

서 신 면



주무관

정도영

복지1팀장

김연진

서신면장

2024. 6. 19.
신광호

협조자

시행 서신면-12305

(2024. 6. 19.)

접수

우 18592

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, 서신면행정복지센터

/ <http://www.hscity.go.kr>

전화번호 031-5189-3450

팩스번호 031-5189-1586

/ assa2105@korea.kr

/ 비공개(5)

청렴한 당신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.